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688호

2021.6.28.(월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규 칙]

제4429호	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	2
제4430호	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	7

자치법규**[규 칙]**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429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1년 6월 28일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.

제6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제10조의2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소방재난안전 홍보에 관한 사항

제10조의2제6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시민안전교육

제10조의2제7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. 소방력 지원에 관한 사항

21. 소방안전지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제26조제4항 중 “대학원(일반대학원은 제외한다)” 을 “대학원” 으로 한다.

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” 를 “지방기술서기관으로, 안전조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” 로 하며, 같은

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관리부·요금관리부·생산부·급수부·시설관리부를 두고 본부장 밑에 안전조사과를 둔다.
- ⑧ 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 1. 기술·안전 분야 점검
 2. 주요사업 추진실태 등 점검
 3.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등 공직기강 점검
 4. 그밖에 사업수행 및 조직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

제74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.

제143조제3항을 삭제하고, 제144조제2항 중 “제1항의 서울협치담당관 및”을 “제1항의”로 한다.

제5장제4절(제145조 및 제146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

제145조(위원장 등)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자치경찰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146조(사무국) ① 사무국에 자치경찰총괄과, 자치경찰협력과,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며, 자치경찰총괄과장,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.

② 자치경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
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
3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 제·개정 및 폐지
4. 자치경찰 장비,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
5.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
6. 자치경찰위원장·위원 보좌
7. 서울경찰청장 임용 협의
8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, 고충심사
9.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

③ 자치경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·조정
2. 국가경찰위원회 심의·조정 요청
3.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·조정
4. 경찰서장 평가 대응
5.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·명령 사무
6.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

- ④ 자치경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
 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예산
 3.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, 청렴도 향상 업무
 4. 자치경찰사무 감사, 감찰, 징계 관련 업무

별표 1의 광나루 수난구조대의 위치란 중 “천호동 481-9”를 “선사로 83-19 (천호동)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 강남소방서 세곡119안전센터의 위치란 중 “밤고개로26길 11-17 (울현동)”을 “밤고개로 268 (울현동)”으로 한다.

같은 표의 강동소방서 강일119안전센터의 위치란 중 “강일동 산 22-75”를 “고덕로98길 22 (강일동)”으로 하고, 관할구역란 중 “479~512, 산1~산12”를 “479~513, 520, 산1~산12”로 한다.

같은 표의 구로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로소방서	고 일 119안전센터	구로구 경인로 408 (교척동)	구로구중 : 구로동(구로1동), 교척동(교척1동), 개봉동(개봉1동 중 74, 76, 78~92, 126~128, 130~134, 136~144, 146~150, 152~157, 159~167, 169~182, 206~207, 214~217, 219, 221 ~224, 421, 226, 227, 239~240, 415~417, 353, 454, 429~435, 437~438, 446, 447, 459, 466, 467, 468, 476, 139, 48-1, 산17~19, 산21, 산22, 산28, 산31, 산40, 475, 476, 484), 개봉동(개봉2·3동)
	구 로 119안전센터	구로구 구로동로 175 (구로동)	구로구중 : 구로동(구로2동 중 589, 590~607, 609~614, 636, 640, 1258, 1262번지 제외), 구로동(구로4·5동)
	공 단 119안전센터	구로구 디지털로34길 56 (구로동)	구로구중 : 구로동(구로3동), 가리봉동
	고 척 119안전센터	구로구 교척로 195 (교척동)	구로구중 : 교척동(교척2동), 개봉동(개봉1동 중 1~5, 7~15, 17~27, 29~41, 43~47, 49~71, 73~75, 92의(2, 3, 4, 7, 8, 9, 10, 61, 76), 96~99, 102, 105~109, 111~122, 124, 125, 126의(1~4, 6, 7), 416, 436, 439~445, 469, 472, 474, 496, 산1~2)
	수 궁 119안전센터	구로구 오리로 1285 (궁동)	구로구중 : 오류동, 천왕동, 향동, 궁동, 운수동
	신도림 119안전센터	구로구 경인로59길 57 (신도림동)	구로구중 : 신도림동, 구로2동(구로2동 중 589, 590~607, 609~614, 636, 640, 1258, 1262번지)

같은 표의 구로소방서란 다음에 금천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금천소방서	금 천 119안전센터	금천구 독산동 1054-8번지	금천구중 : 가산동, 독산동
	시 흥 119안전센터	금천구 시흥대로45길 31 (시흥동)	금천구중 : 시흥동

같은 표의 하단 비고 중 “구로소방서 고일119안전센터” 를 “구로소방서 고일119안전센터, 금천소방서 금천119안전센터” 로 한다.

별표 3의 구로소방서119구조대란 다음에 금천소방서119구조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금천소방서 119구조대	금천구 독산동 1054-8번지	금천소방서 관할구역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) 제1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,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면직 시까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등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 및 인사운영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와 그 사무국 신설에 따른 사무국 산하 부서 및 소관 사무 규정(제145조 및 제146조)
- 나. 소방재난본부 소관사무 조정 및 소방서 신설 등에 따른 119안전센터, 구조대 명칭·위치·관할구역 규정
 - (1) 소방재난본부 사무 조정(제10조의2)
 - ▶ 재난대응과 → 현장대응단(소방력 지원, 소방안전지도 구축·운영 사항)
 - ▶ 안전지원과 → 예방과(소방재난안전 홍보 사항)
 - (2) 금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119안전센터, 구조대 명칭·위치와 관할구역 규정(별표2 및 별표3)
 - (3) 도로명 주소 부여 등에 따라 소방관서 주소 현행화(별표1 및 별표2)
- 다.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와 소관업무 명확화를 위해 규정(제73조 및 제74조)
- 라. 서울민주주의위원장(2호), 서울혁신기획관(3호), 도시공간개선단장(3호), 공공개발기획단장(3호), 청년청(담당관)(4호), 서울협치담당관(4호)의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(제5조, 제6조의2, 제18조, 제18조의2, 제143조 및 제144조)
- 마.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간 업무협력 및 일반대학원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반대학원의 부원장 근거 마련(제26조)

◆ **서울특별시규칙 제4430호****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**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1년 6월 28일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소방공무원” 을 “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직급별·직렬별” 을 “직급별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

별표 1의 제목 중 “소방공무원” 을 “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” 으로 한다.

별표 1의 표 중 총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총 계	11,552	4,594	350	1,139	5,191	278
-----	--------	-------	-----	-------	-------	-----

같은 표의 정무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부시장란 다음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란,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정무직 계	4	2				2
-------	---	---	--	--	--	---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	--	--	--	---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	1					1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	--	--	--	---

같은 표의 일반직 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반직 계	10,564	4,537	341	396	5,014	276
-------	--------	-------	-----	-----	-------	-----

같은 표의 4급 소계란, 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급 소계	249	147	17	8	66	11
-------	-----	-----	----	---	----	----

서기관	101	73	7	7	8	6
-----	-----	----	---	---	---	---

같은 표의 5급 소계란, 행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급 소계	1,423	940	46	56	325	56
-------	-------	-----	----	----	-----	----

행정	655	466	42	23	75	49
----	-----	-----	----	----	----	----

같은 표의 6급 소계란, 행정란, 전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6급 소계	3,457	1,826	107	106	1,293	125
-------	-------	-------	-----	-----	-------	-----

행정	1,299	837	82	40	250	90
----	-------	-----	----	----	-----	----

전산	88	62	3	3	16	4
----	----	----	---	---	----	---

같은 표의 7급 소계란, 행정란, 방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7급 소계	3,423	1,351	113	145	1,737	77
-------	-------	-------	-----	-----	-------	----

행정	1,284	699	82	59	384	60
----	-------	-----	----	----	-----	----

방호	31	7	4	4	16	
----	----	---	---	---	----	--

같은 표의 8급 소계란, 행정란, 숙기란, 시설관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8급 소계	1,370	189	50	71	1,055	5
-------	-------	-----	----	----	-------	---

행정	167	31	16	16	101	3
----	-----	----	----	----	-----	---

숙기	7	1	6			
----	---	---	---	--	--	--

시설관리	55	2			53	
------	----	---	--	--	----	--

같은 표의 연구직 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연구직 계	403	27		199	177	
-------	-----	----	--	-----	-----	--

같은 표의 연구사 소계란, 환경연구란, 공업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연구사 소계	341	25		164	152	
--------	-----	----	--	-----	-----	--

환경연구	77	1		61	15	
------	----	---	--	----	----	--

공업연구	44				44	
------	----	--	--	--	----	--

별표 2의 표 중 소방공무원 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방공무원 계	7,389	151		7,238		
---------	-------	-----	--	-------	--	--

같은 표의 소방정란, 소방령란, 소방경란, 소방위란, 소방장란, 소방교란, 소방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방정	30	2		28		
-----	----	---	--	----	--	--

소방령	145	24		121		
-----	-----	----	--	-----	--	--

소방경	434	23		411		
-----	-----	----	--	-----	--	--

소방위	482	40		442		
-----	-----	----	--	-----	--	--

소방장	833	39		794		
-----	-----	----	--	-----	--	--

소방교	1,752	5		1,747		
-----	-------	---	--	-------	--	--

소방사	3,707	14		3,693		
-----	-------	----	--	-------	--	--

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2조제3항 관련)

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 무 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
경찰공무원 계	3					3
총경	1					1
경정	1					1
경위	1					1

부칙

이 규칙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자치경찰제 시행, 소방 분야별 기준인력 보강 등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‘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신설’에 따른 증원(36명) 및 이관(7명).

나. 화재진압·구조 등 소방 분야별 현장 부족인력 확충, 관서 신설 등 소방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(193명) 및 이관(6명).

다. 의정활동 지원(5명), 생태독성 검사(1명)를 위한 증원.

라. 아리수 수질향상·공정 효율화를 위한 아리수정수센터 정원 조정.

－ 시설관리8급 △8 → 공업연구사 +8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